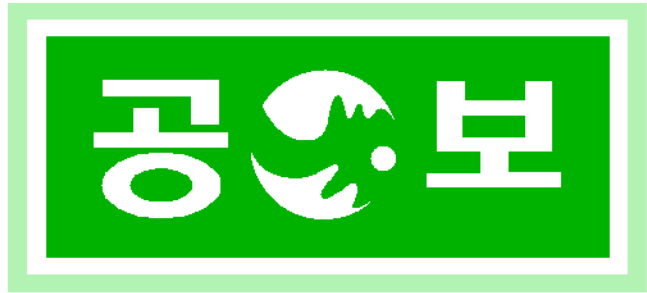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관	기 관 의 장



제 694 호 2011. 6. 15(수)

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425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2
-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426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4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 425호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15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성취지

○ 국, 실·과의 업무 조정과 일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고, 시설재난
관리과 폐지와 주민참여과 신설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사무분장을
명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 명칭 변경

- 생활경제국 → 복지경제국
- 도시건설국 → 건설도시국

나. 과 폐지 및 신설

- 폐지 : 시설재난관리과
- 신설 : 주민참여과

다. 실·과 명칭 변경

- 기획감사실 → 기획홍보실
- 회계정보과 → 회 계 과
- 문화홍보과 → 문화체육과
- 생활지원과 → 복지지원과
- 경제진흥과 → 경제일자리과

라. 사무분장 조정(신규)

- 자치행정, 자치센터 업무 : 총 무 과 → 주민참여과
- 교육지원 업무 : 평생교육과 → 주민참여과
- 시민·사회단체 관리 : 주민참여과
- 주민참여, 커뮤니티비즈니스 : 기획감사실 → 주민참여과
- 마을기업 : 경제진흥과 → 주민참여과

- 시설관리, 청사관리 : 시설재난관리과 → 회 계 과
- 운동장관리, 국민체육센터, 오토벨리 복지센터 : 시설재난관리과 → 문화체육과
- 재난방재 : 시설재난관리과 → 건 설 과
- 정보관리, 정보통신 : 회계정보과 → 총 무 과
- 계약심사 : 회계정보과 > 기획홍보실
- 구정홍보 : 문화홍보과 → 기획홍보실
- 청소년 : 문화홍보과 > 사회복지과

3. 의견제출

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202, fax 219-721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일부 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 426호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6월 15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- 업무성격을 고려한 부서조정과 알기 쉬운 국, 신·과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,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 명칭 변경

- 생활경제국 → 북시경제국
- 도시건설국 → 건설도시국

나. 과 폐지 및 신설

- 폐지 : 시설재난관리과
- 신설 : 주민참여과

다. 실·과 명칭 변경

- 기획감사실 → 기획홍보실
- 회계정보과 → 회 계 과
- 문화홍보과 > 문화체육과
- 생활지원과 > 복지지원과
- 성제진흥과 → 성제인자리과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(☎ 219-7202, fax 219-721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□ 기구표 - 조정(적색:폐지, 청색:신설, 녹색:이동)

기	국	심	과	의	회	직	속	기	관	동
구	3	1	심17과73담당	1	과 2선무(1담당)	1	소1과(5담당)	8	동(8동)	
정	의	계	분	칭	의	회	보	건	소	동
		500	378		13		36		73	

